

예 방 규 정

(제정 1984. 11. 1.)

제 1 장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위험물관리와 취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과 학생 및 공사 도급업자 등 출입자 전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방화관리자의 임무

제3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자체 방화관리자의 총 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총 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방업무 담당부서의 실(팀)장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한다.

② 주무부서의 실(팀)장을 분임방화관리자로 선임한다.

③ 각 실(팀) 일일 화기점검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각 실(팀)의 최상급자를 화기책임자(정)로 정한다.

제4조(방화관리자의 임무) ① 제3조 각 항에 의거 선임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화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설비 및 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시행 결정
2. 자체 방화관리의 업무 지도 감독
3. 소방설비와 화재경보 및 탐지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4. 화기취급 감독
5. 소방교육 및 훈련실시
6. 기타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

② 분임방화 관리자의 임무

1. 해당부서의 방화계획 및 소방설비, 화재경보, 탐지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2. 화재요인 제거 및 화기취급 감독
3. 방화환경 조성 및 방화관리 일지의 체크 결재
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 각 실(팀) 화기 책임자(정)의 임무

1. 실내제반 방화 관리 및 안전점검
2. “화기 책임자”(부) 및 화재요인 제거
3. 일일 소방점검 및 화재요인 제거

④ 위험물 취급주임의 임무

1. 당해 소방시설 및 유지관리

2. 제반 위험물 관리 및 일일 점검
3. 자체 화재요인 제거

제5조(소방기관의 보고 및 연락사항) 방화관리자는 다음 업무에 대하여 소방기관에 보고 및 연락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발생
2. 소방훈련 실시 결과 및 소방계획서 작성·보고
3. 소방용 설비 등 점검과 결과 지도사항
4. 화재예방상 필요한 검사와 지도 요청
5.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6조(분임방화관리자 연락사항)

1. 임시로 화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2. 소화기 및 화재탐지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
3. 건축물 및 각종 소방설비를 설치 변경할 때
4.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 3 장 소방안전위원회

제7조(소방안전위원회 설치 목적) 소방 및 안전에 관한 운영방침을 수립·검토하고, 소방 및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수립, 재해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편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약간명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 ③ 부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각 분임방화관리자로 한다.
- ⑤ 간사는 방화관리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

1. 소방계획서의 적합성 검토
2.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3. 각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소방설비 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제11조(화기사용 제한) 방화관리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화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2. 흡연장소 또는 금연장소 지정
3. 공사업체에 소방설비 배치 지시
4. 각종 가연물의 정리 지시

제 4 장 예방관리 조직

제12조(방화관리조직) 본교 방화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



제 5 장 점검 및 검사 실시 방법

제13조(자체 소방점검 방법) ① 위험물 저장시설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소방점검 설비 점검

제14조(자체점검 시기)

① 자체점검

1. 총책임자(방화관리자) : 분기별 및 월별 점검
2. 분임방화관리자 : 주 1회 점검
3. 각 실(팀) 화기책임자 : 1일 1회 점검
4. 당직 및 야간근무자 : 근무시간 중 수시 점검

② 각 실(팀) 화기책임자

책임구역내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임시 화기를 다루는 작업을 하는 장소, 퇴근 후 재떨이, 쓰레기통, 전열기구, 조명 등의 점검

제15조(방화환경 조성) ① 표어, 포스터를 수집 매년 10월에 각 실(팀)에 부착한다.

② 입간판, 프랑카드 등을 제작, 정문 또는 현관에 비치·게시한다.

제 6 장 자위소방대 조직

제16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각 실(팀)을 기본단위로 편성한다.

② 화재가 돌발하면 발생 부서의 장은 타 부서지원자를 지휘하여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제17조(자위소방활동) ① 휴일 및 야간에 있어서는 당직 근무자가 총책임자 자격으로 초동조치를 취한다.

② 통보연락은 소방서, 총장, 총무처장, 방화관리자에게 우선 연락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을 발동한다.

③ 교내에 있어 인원을 동원하여 준비되어 있는 소방설비를 활용, 초기 소화임무를 수행한다.

제18조(위험물 저장 및 취급)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저장 및 취급 : 위험물 지정은 적법절차를 밟아 탱크 액면계에 확인표시된 저장량 이상은 저장하지 아니한다.
2. 불 출 : 위험물을 불출할 때에는 안전규정에 따라 위험물 취급주임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위험물 저장소 주위 정돈 : 위험물 저장소 점검 및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19조(위험물 저장고 게시판 설치) 다음과 같이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유 취급소>

게 시 판	화 기 업 금
색	적색바탕 백색글자
규 격	가로 0.6m 이상 세로 0.3m 이상

제20조(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본 예방규정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서식 포함)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